『추안급국안』의 자료적 특성 및 추국의 사례

김우철(국사편찬위원회)

1. 자료 소개

○ 331책 1질의 공초기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奎15149)
○ 영인본 30책(1983, 아세아문화사), 번역본 90권(2014, 흐름출판사)
○ 1601년(선조 34)~1892년(고종29) 약 3백년 간의 기록
○ 일부 누락된 기록은 규장각의 추국일기(30책), 국청일기(19책), 친국일기(22책) 등으로 보완 가능
○ 국왕의 특지에 따라 의금부에서 변란·역모·당쟁·사학·흉소·괘서·가칭어사·능상방화 등 중죄인을 체포·신문한 기록
○ 일반적 기록 순서
  • 전교에 의한 여러 대신의 명초(命招)
  • 상변서(고변서) 혹은 사건의 개요
  • 나래(拿來)·설국(設鞫) 결정 및 시행 절차
  • 좌목(座目) : 대신, (별)문사낭청, 별형방, 문서색의 직함·성명, 참가 여부
  • 공초(元情/原情, 更招, 面質, 決案/結案, 照律)
  • 행형(行刑, 前單子/後單子)
○ 기록 형식: 해서(楷書, 331책 중 1책만 초서草書), 이두(吏讀) 사용
○ 활용 가치 : 실록,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자료에 없는 생생한 사건·사례
  • 정치사적 가치 : 당쟁사, 변란사
  • 사회사적 가치 : 신분 이동(추노, 유랑 지식인[1]), 민중 운동
  • 사상사적 가치 : 미륵신앙, 정감록, 서학(천주교)
  • 생활사적 가치 : 귀양살이

2. 조선후기 사법기관과 추국청·포도청

1) 사법기관의 구분
○ 삼법사(三法司): 중앙 소재 사법행정 핵심 기관. 형조·한성부·사헌부

1) 18세기 초·중엽 급증 서당 및 가정교사, (며칠~몇 달), 6달~1년, (1~2년)

○ 사송아문(詞訟衙門): 민사 소송과 분쟁에 대한 재판을 담당
  • 지방: 군현(수령)→감영(관찰사, 상급심)
  • 서울:한성부(전답·가옥소송),형조(행정/상급심)·사헌부·장례원(노비송)
○ 직수아문(直囚衙門): 죄수를 직접 체포하여 구금할 수 있는 권한
  • 조선 전기: 병조·형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례원·종부시 및 관찰사·수령 (경국대전)
  • 조선 후기: 비변사·포도청 추가(숙종대 수교)

2) 의금부
○ 국왕의 특별 사법기관. "掌奉敎推鞫之事"(경국대전)
○ 별칭: 조옥(詔獄)·금부(禁府)·왕부(王府)·금오(金吾)
○ 판사-지사-동지사(이상 겸관)-경력-도사-서원-나장
○ 왕족·관원의 범죄, 강상죄 등 국가 범죄
○ 추국청
  •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 등 추국을 전담하는 임시기구. 국청
  • 위관(委官)을 맡은 대신이 운영
  • 죄인 조사·신문. 추안(국안) 작성 및 보고

3. 추국의 절차와 내용

1) 구분 : 국왕 친림(親臨) 여부와 참석자 범위. 위계의 차이
○ 친국(親鞫)
  • 국왕 친림. 궁성 호위
  • 시·원임대신, 의금부 당상, 양사, 좌우 포도대장. 문사 낭청 8인
  • 장소: 태복시(太僕寺=사복시(司僕寺)), 내병조(內兵曹)[2].
    =때에 따라 사정전·인정문(창덕궁), 명정문(창경궁), 금위영
    =또는 혜정교(중학천, 현재 교보 후문앞 보도), 광통교
○ 정국(庭鞫)
  • 임금의 위임을 받은 대신이 궐 안에서 죄인을 대신 국문
  • 친국과 절차 동일. 궁성 호위 없지만 임금 지시 따라 하기도.
  • 양사가 갖추어져야. 문사 낭청 6인
  • 장소: 내병조, 태복시.

2) 궁궐 안 시위(侍衛)·의장(儀仗) 담당

○ 추국(推鞫)
• 임금의 위임을 받은 대신이 궐 밖에서 죄인을 대신 국문
• 일반적으로 친국·정국·추국을 통칭하여 추국이라 하기도
• 장소: 주로 의금부. 또는 임금 지시 따라 궐 안에서 하기도(내병조)
• 양사 중 일사가 없어도 진행. 문사 낭청 4인
• 같은 사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뀜.
←친국이 정국이나 추국으로, 추국이 정국이나 친국으로 되기도
○ 삼성추국(三省推鞫)
• 형조·사헌부·사간원 혹은 형관·정승·대간
→의금부·사헌부·사간원 혹은 의금부·정승·대간
• 형조에서 의금부에 이첩하여 죄인 체포
• 범행정절은 형조에서 이미 승관, 국청은 결안만
• 강상지범
=부모, 남편 살해 혹은 관노가 상전 살해
=계모나 백·숙모와 간통 등

2) 구성 및 절차
○ 관원의 구성
• 추국관: 시·원임대신, 의금부 당상, 양사, 승지. 수석이 위관(委官)
• 실무자 : 문사 낭청, 별형방, 문서색
○ 추국절차
• 국왕 전교→추국 관원 임명→추국청 설치→죄인 나래→심문
→재심문(형신, 대질심문)→결안→조율→처형
○ 형신절차
• 형신(1일 2회 한도)→압슬(壓膝)→낙형(烙刑)→물고(物故)

3) 추국과 결안(結案)
○ 일반적 심문 절차: 심문-진술-형신-재심문-자백-결안-조율-처형

A1. 죄인 張戊申에게 첫 번째로 매질하여 심문하면서 訊杖 20대를 때렸다.

A2. 直爲所如中. 제 아비와 李仁立이 作變을 계획할 때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丁字閣에 작변할 때 저도 좇아갔습니다. 제 아비와 이인립이 땔나무로 정자각에 불을 지른 상황을 목격한 것이 틀림없이 확실합니다. 잘 살펴 처리하십시오.

A3. 추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장무신이 이미 죄를 시인했습니다. 結案의 진술을 받은 뒤에 照律하여 처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했다.

A4. 죄인 장무신. 結案白等.
(A4-1) 直爲所如中. 제 根脚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비는 守護軍 張得善이고, 어미는 良女 業辰입니다. 할아비는 良人 張宗世이고, 외할미는 愛云입니다. 豊德 땅에서 태어나, 부모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A4-2) 제 아비와 李仁立이 作變을 계획할 때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丁字閣에 작변할 때 저도 좇아갔습니다. 제 아비와 이인립이 땔나무로 정자각에 불을 지른 상황을 목격한 것이 틀림없이 확실한 일입니다.
A5. 죄인 수호군 장무신, 나이 16세.
(A5-1) 제 아비와 李仁立이 作變을 계획할 때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丁字閣에 작변할 때 저도 좇아갔습니다. 제 아비와 이인립이 땔나무로 정자각에 불을 지른 상황을 목격한 것이 틀림없이 확실한 죄입니다.
(A5-2)『大明律』의「謀反大逆」조에 이르기를, “무릇 謀反 및 大逆과 宗廟 · 山陵 및 宮闕을 부수려고 꾀한 경우는 단지 함께 모의한 사람도 主犯과 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陵遲處死한다. 아비와 아들은, 나이 16세 이상이면 모두 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 및 어미와 딸, 아내와 妾, 할아비와 손자, 형제와 자매 및 아들의 아내와 첩은 功臣의 집에 내려주어 종으로 삼는다. 재산은 모두 관아에서 몰수한다. 男夫로 나이 80세 이상이거나 篤疾인 경우, 婦人으로 60세 이상이거나 廢疾인 경우는 모두 緣坐의 죄를 면해준다. 伯父와 叔父, 형제의 자식은 호적에 함께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삼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 安置한다. 연좌된 사람으로 함께 거처하지 않는 사람의 재산은 관아에서 몰수하는 범위에 넣지 않는다. 시집가기로 허락한 딸로서 제 남편에게 돌아갈 곳이 정해진 경우, 아들이나 손자 가운데 養子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및 아내를 맞이하기로 되어있지만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은 경우는 모두 연좌하지 않는다.” 했다.
장무신은 능지처사한다. 그의 아버지나 아들이 16세 이상이면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 15세 이하 및 어미와 딸, 아내와 첩, 할아비와 손자, 형제와 자매 및 아들의 아내와 첩은 공신의 집에 내려주어 종으로 삼는다. 재산은 모두 관아에서 몰수한다. 백부와 숙부, 형제들의 자식은 호적에 함께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3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 안치한다.
A6. 죄인 張得善 · 李仁立 · 張戊申 등을 軍器寺 앞길에서 처형했다.

• 1676년(숙종2), 제릉(齊陵)에 불을 지른 장득선(張得善) 등의 추안(원문 별첨01, 02)
• A1: 장무신에 대한 1차 형신. 20대 중 20대에 자백
• A2: 直爲所如中(곳한바다해;바른 바에 대하여, 바른대로 하면) 자백내용
• A3: 자백 토대 결안·조율에 대한 임금의 윤허
• A4: 결안. A4-1 근각(根脚, 신원), A4-2 자백 내용(A3와 동)

• A5: 조율. A5-1는 A4-2 반복, A5-2는 법조문 적용
• A6: 처형

○ 결안의 변화
• 영조대 무신란(戊申亂)이후 결안 혹은 조율 절차 생략하고 처형하기도
• 정조대 이후에는 1문 1답으로 변화
• 순조대 이후 결안 내용의 변화로 귀결

B1. 죄인 金致奎, 나이 29세, 更推白等.

너는 하늘의 못된 기운이 모이고 마음은 귀신이나 도깨비와 같아, 솜씨는 속여 홀리는 버릇을 쌓았으며 의도는 단지 재앙과 난리만을 바랐다. 요망한 讖書를 전해 물려받고 거짓된 이름을 꾸며냈으며, 더러는 聖人이나 道士라고 일컫고, 더러는 將軍이나 元帥로 일컬었으며, 더러는 江華島 안에 있다고 일컫고, 더러는 太白山 아래에 거주한다고 일컬었으며, 더러는 洪景來 등 여러 역적이 죽지 않았다고 일컫고, 더러는 濟州에서 모임을 갖기로 기약했다고 일컬었다. 허황된 이야기를 전해 퍼뜨리고 시끄럽게 떠도는 소문을 부채질했으니, 이미 천지 사이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나가도록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쌓아온 도리에 어긋난 마음으로 감히 지극히 흉악한 죄를 이루려고, 올해 3월 14일에 스스로 짓고 스스로 베껴 쓴 凶書 두 장을 淸州兵營 北門에 내걸어 붙였는데, 하늘같은 임금님을 지적해 탓하고 나라를 거짓으로 헐뜯었으니, 더럽고 어지럽히는 말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다. 이는 실로 천지 만고에 없었던 지극한 역적이니,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뼛골이 이미 먼저 떨린다. 하늘의 도리는 밝고 환하여 죄상이 죄다 드러났으니, 천 번 살을 발라도 부족하고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다. 신령과 사람이 분노를 풀기에는 잠깐 동안도 지체할 수 없으니 빨리 遲晩하라고 심문한다.

B2. 저의 여태까지의 수두룩한 지극히 흉악한 죄상이 남김없이 탄로 났으니, 이 지경에 이르러 달아나기 어려움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遲晩하는 다짐을 바칩니다. 잘 살펴 처리하십시오.

B3. (생략)

B4. 죄인 金致奎, 나이 29세. 結案白等.

(B4-1) 제 根脚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B4-2) 흉악한 일을 행한 이모저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하늘의 못된 기운이 모이고 마음은 귀신이나 도깨비와 같아, 솜씨는 속여 홀리는 버릇을 쌓았으며 의도는 단지 재앙과 난리만을 바랐습니다. 요망한 讖書를 전해 물려받고 거짓된 이름을 꾸며냈으며, 더러는 聖人이나 道士라고 일컫고, 더러는 將軍이나 元帥로 일컬었으며, 더러는 江華島 안에 있다고 일컫고, 더러는 太白山 아래에 거주한다고 일컬었으며, 더러는 洪景來 등 여러 역적이 죽지 않았다고 일컫고, 더러는 濟州에서 모임을 갖기로 기약했다고 일컬었습니다. 허황된 이야기를 전해 퍼뜨리고 시끄럽게 떠도는 소문을 부채질했으니, 이미 천지 사이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나가도록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쌓아온 도리에 어긋난 마음으로 감히 지극히 흉악한 죄를 이루려고, 올해 3월 14일에 스스로 짓고 스스로 베껴 쓴 凶書 두 장을 淸州兵營 北門에 내걸어 붙였는데, 하늘같은 임금님을 지적해 탓하고 나라를 거짓으로 헐뜯었으니, 더럽고 어지럽히는 말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또 스스로 제 이름과 거주지를 그 안에 써서 마치 진짜 그러한 흉악한 패거리가 있는 듯하면서, 반드시 제 말을 듣는다면 함께 오고 듣지 않는다면 빨리 죽여 달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단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제가 한 짓이라고 의심을 빚어내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도리어 제가 꾀어내기 어려운 자에게 죄를 돌리려고 하면서, 흉악한 범죄를 은밀히 이루려는 마음을 뚜렷이 품고 요행을 바랐습니다. 이는 실로 천지 만고에 없었던 지극한 역적으로 몹시 요망하고 흉악하여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뼛골이 이미 먼저 떨립니다. 하늘의 도리는 밝고 환하여 죄상이 죄다 드러났으니, 천 번 살을 발라도 부족하고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신령과 사람이 분노를 풀기에는 잠깐 동안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大逆不道가 틀림없이 확실하다고 遲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 1826년(순조26), 김치규의 추안(원문 별첨03, 04)
• B1: 심문 내용
• B2: 遲晩(지만;너무 오래 속여 미안하다) 자백
• B4: 결안. B4-1 근각(根脚, 신원), B-2 자백 내용(심문인 B1과 동)
←결안 및 그 기초가 되는 자백의 과정에 심문관의 의도가 깊게 개입

4. 추국의 사례

1) 이충경(李忠慶) 모반 사건(1629, 인조7년 2월)

○ 내용

> 李忠慶 · 韓成吉 · 戒春 · 莫同 등이 사형을 당하였다. 이충경 등은 모두가 황해도의 모질고 사나운 도둑들로서 胡亂의 틈을 타 떠도는 백성들을 유혹해 그들을 모아 도둑이 된 것인데, 그들은 산골 깊은 곳에다 담을 쌓고는 옛날 崔瑩과 南怡 두 장군의 초상을 그려놓고 제사를 올린 다음 저들끼리 규약을 정하고 관원을 두고 각 부서를 만들고는 서로 모여 맹세하고 이충경을 우두머리로 삼아 마침내 역모를 꾀하였다. 그들은 황해도에서 강원도로 옮겨와 살해와 약탈을 자행하면서 鐵原 · 平康 사이에서 출몰하다가 이번에 그 두 고을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다. 그들의 반역 문서는 내용이 너무 흉악하고 참혹하여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점들이 있었다. (『인조실록』 7년 2월 27일).

- 추노(推奴) 및 군사가 되게 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유인
- 황해도 서흥·수안·신계·곡산, 강원도 이천, 황해도 안변 익곡리 제사
- 최언룡집의 도망 노비 끝복 빌미로 소 탈취
- 강원 평강 대장간에서 편곤(鞭棍) 4개 제작
- 최언룡 신고로 평강에서 김승인 등 일행 일부 체포, 김승인 고변
- 철원부에서 이충경 등 체포. 당시 전복(戰服)·장검(長劍) 착용, 편곤·사다리·능장(稜杖) 등 가마니 속에 소지
- 2월 그믐밤 거사 예정, 편곤 무기로 사다리로 대궐 넘으려

○ 배경

- 이충경: 충의위. 훈련도감·포도청 군관 역임. 정묘호란으로 유랑. 경력 사칭하며 가담자 모집
  - ←당시 많은 도망 노비의 발생이 하나의 배경
  - =최언룡네 끝복 빌미도 逃奴
  - =도노 배경: 신역의 부담(속오군 兼役 인조~효종대 부담 가중)
  - =전문적 도망 노비 추적자라는 새로운 직업 탄생
  - =김승인·최대기 등은 추노 계기 입당. 대원·응정도 원래 남의 종
    - ←응정은 林檜의 도노인데, 이충경의 신고로 포상(4口1賞)
- 정묘호란(1627) 직후라는 사회적 배경; 평안도·황해도 피해 극심
  - =이충경 등 호란 때 가족 잃고 유랑 신세
  - =후금에 대한 적대적 감정+서울의 급료병 제안 솔깃
- 최영·남이 등 反왕조적 분위기 이용

○ 이상사회론 : 『改國大典』 등(아래 번역문, 원문 별첨05, 06)

- 군역 및 군제 개혁안이 많음

←당시 백성의 가장 큰 고통이자 개혁 대상이 군역

- 조세 및 토지제도 관련 조항도 부담 경감 및 공평 부담에 초점
- 실현 가능성 없고, 표현 방식 투박, 형식도 일관적이지 못함

→당시 백성들 당면한 냉혹한 현실 반영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새로운 저항으로 전화

1. 百姓은 나이 15세에 軍役을 시작하여 50세에 군역에서 면제된다. 지금 나이 40세 이상은 모두 군역에서 면제한다. 賤人은 良人으로 풀어준다. 內奴도 아울러 모두 같이 군역으로 정한다. 집안에서 부리는 종들은 驛奴婢로 身役을 정한다. 姦臣의 자손은 鄕吏로 정해 소속시킨다. 前 향리나 前 역노비는 아울러 군역으로 정해 풀어준다. 백성을 괴롭혀 피를 짜내는 어지러운 정치는 없앤다. 잔인하고 난폭한 어지러운 정치를 잘 살펴서 어지러움을 씻어내고 백성을 다스린다.

2. 논밭에 屯田 몫으로 卜定하는 몫은, 1등 논밭에는 30卜, 2등 밭에는 20복, 3등 밭에는 15복, 4등 밭에는 10복, 5등 밭에는 8복, 6등 밭에는 5복이다. 다시 바꾸어 보태거나 줄이는 일이 없이 고정시킨다. 貢稅나 貢物 외에 갖가지 모양의 雜役은 죄다 없앤다.

3. 백성과 양반으로 범죄에 억울하게 관련되어 매질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하늘에 이르도록 원망스럽고 답답하다. 감옥에 오래도록 갇혀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은 사건처리를 잘 살펴서 없앤다. 혹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훔친 재물이 뚜렷이 드러난 사람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차례 매질하여 심문하고 즉각 풀어주며, 두 번 죄를 저지른 사람은 두 차례 매질하여 심문하고 즉각 풀어준다. 세 번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거나 반역한 죄상이 명백히 드러나면 즉각 죽이고, 모든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 笞刑으로 매 10대를 때리는 것으로 죄를 다스리고 풀어준다.

4. 각 工匠들이 응당히 들여야 하는 물건들은 덜어서 없애주기 어려운 형편이다. 각각 소속된 그 고을의 조세로 바치는 베는 덜어서 없애주고, 불법으로 거두는 일은 없앤다.

5. 出身은 없애어 별도의 군역으로 정한다.

6. 訓鍊都監은 없앤다.

7. 統制使 · 水使 · 虞侯 · 防禦使 · 別將 · 贊畫使 · 館餉使는 모두 없앤다.

8. 一品은 머슴 50명, 二品은 머슴 40명, 三品은 머슴 30명, 四品은 머슴 20명, 五品은 머슴 15명, 六品은 머슴 10명, 庶人은 머슴 5명을 종들처럼 부리며 심부름 시킨다.

9. 功臣으로 으뜸이 되는 공로가 있는 元勳은 자손 대대로 忠義衛에 소속시키며, 작은 공로가 있는 原從은 자손 대대로 忠贊衛에 소속시킨다.

10. 烽燧와 烟臺는 영원히 없앤다.

11. 兵使는 없앤다.

12. 水軍은 영원히 없앤다.

13. 각 고을의 進上은, 생산되는 물건 이외에 구입해 쓰는 물건은 영원히 덜어서 없애준다.

14. 승려에게 시집가서 태어난 자식은 官奴婢나 驛奴婢로 정해 소속시킨다.

15. 나이 젊어 기운이 세고 튼튼한 사람으로서 '艹/陸 艹/垄'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모두 목을 벤다.

16. 幼學 · 校生 · 品官으로 복을 받아 대대로 군역에서 빠져 한가로이 노니는 사람들은 군역으로 떨어뜨려 정한다.

17. 武學은 영원히 군역으로 떨어뜨려 정한다.

18. 충의위 · 충찬위는 모두 군역으로 떨어뜨려 정하고, 현명한 임금의 자손이라는 점에 기대어 군역에서 빠져 한가로이 노닌다고 일컫는 사람들은 군역으로 떨어뜨려 정한다.

19. 재물을 불려 이익을 취하려 물건을 사들여 장만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20. 學田 · 陵田은 모두 없앤다. 國田 · 廬田과 여러 宮家의 農莊, 세력 있는 집안과 宰相의 農莊은 모두 흩어 없애어 賞으로 준다.

2) 안익신(安益信) 모반 사건(1646, 인조24년 3월)

○ 내용

• 3/26 이산현 초관(哨官) 이석룡(李碩龍), 생원 유탁의 역모 고변

• 임경업 대장으로, 군사 모아 전주 거쳐 이산 통해 상경

←당시 임경업은 청나라 포로. 6월에나 귀환

• 3/27 거병하여 행군 중 유탁·권대용 체포

←조정에서는 충청·전라·경상 군사 동원 명령

• 3/28 고변 발각 후 흩어짐

• 4/3 안익신·이지혐, 도망지 보은에서 체포

○ 주모자

• 안익신: 주거 부정, 전국 떠돌며 유랑. 실질적 대장

• 권대용: 이지혐과 동학(同學). 안익신과 추노(推奴)로 연결, 공모. 인조반정 직후부터 병자호란 이후 전국 다니며 인심 탐색.

• 이지혐: 서울지역 안익신·권대용과 충청지역 유탁·홍영진 연결.

• 유탁: 이산 지역 군병 모집, 모반 핵심

○ 가담자

• 위의 주모자들이 혈연·지연 등의 이유로 끌어들임

• 속오군에 편성된 경우가 다수

○ 사건의 의미

• 인조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모반의 흐름 연속

←임경업 거명. 2년 전 심기원의 모반 언급

• 면천 안익신, 진사 권대용이 이러한 뜻을 품고 연고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지역에서 일정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연대 모색

• 일반 농민들은 모반이라는 의식 없이 거사에 가담

=임경업(병자호란 반청의식 및 추락한 조정 권위 반감)

=정씨 및 최영 후예

=속오군이 부담되니 거꾸로 조직이 동원

• 조정은 이를 수습하며 정권 안정 도모

=고변인 이석룡 파격 대우(괴산 군수, 가선대부, 공신, 군호)

=국가 방어체제의 정비(토포사, 속오군 전임 영장제 복설 계기)

←호란 이후 청나라 감시 피해 군사시설 확충 계기

○ 자료의 특성

• 장계와 첩정 등을 첨부하는 공문에 포함된 진술 기록 등 문서의 특성에 따라, 직접 인용으로 바꾸어 번역할 경우 7차 인용까지 등장(아래 원문, 번역문 별첨08~13)

<영인본 6책 130쪽>

○三月二十九日戊時成貼全南道都事李元圭狀啓節到付全州府尹牒呈內今月二十七日戊時到付公淸道尼山縣監馳報內今月二十六日戊時量本縣哨官李碩龍進告內昨日午時本縣束伍私奴男伊來言矣身曰本縣禾谷柳生員濯使我傳言于哨官主使之招來是如爲白去乙矣身不知某

<131쪽>

事今日早朝進去于柳家爲乎矣柳濯言曰林將來在龍潭大垡時方聚軍謀擧大事四月初一日天祭後發軍先犯全州初三日自直路當過尼山吾則今方治行轉向龍潭向汝則當爲吾之軍官明日曉頭及良聚會于龍溪磨店亦爲去乙見其近處左右松林中皆有隨兵其數不能詳知爲乎矣公州前哨旗摠金愛上在於其中是置多是公州前哨軍人是去乙矣身聞見不勝驚駭問其曲折則又曰慶尙道軍則自聞慶向京中爲遣全南道南原軍則自恩津石城作路直向兵營云云爲去乙矣身不勝戰慄佯爲許諾爲遣敢來進告爲去乎以此事意爲先馳報敎矣連山校生李之馦衙前金男亦爲參謀是如柳濯言說爲有置竝只移文期於捕捉爲只爲白侈晉是置有亦縣監聞來不勝戰慄寒心卽爲枚報本道巡察使道爲旀初一日先犯全州之說雖不可信極

<132쪽>

爲兇慘爲乎等以罔夜馳報爲臥乎所牒呈是白齊今月二十八日巳時到付公淸監司秘密關一樣是白齊同日巳時到付公淸監司秘密關內卽刻到付尼山縣監牒呈內縣居金忠立進告內今二十四日洞內居柳濯言于矣身曰其矣洞內居校生洪榮振亦其矣妻娚連山居李之馦家歸到時京居進士權大用適音夜深後自京中下來與之相話次大用謂之馦曰吾與汝如兄弟有何諱事自丁丑以來將奐大事與我同死生乎之馦曰汝我之間雖死豈敢相負哉大用曰然則汝多聚力士以待我擧事可也云云是如柳濯傳說爲臥乎所其與權大用謀判然爲乎等以玆以來告云云是置有亦右人等一時來告爲乎矣兩人所言各有異同乙仍于各各馳報爲臥乎所牒呈是置有亦將此事意一邊馳啓爲去乎同權大用亦自京下來方在本府地是如爲置不意捕捉嚴囚以待狀啓回下

<133쪽>

處置向事關是白齊同日戊時到付公淸監司秘密關內尼山所捕賊人柳濯招內矣身亦奴男伊起送招致李碩龍誘以帶率軍官何意是旀發軍中路被捉辭緣竝只現告亦推考敎是臥乎在亦李之馦與洪榮振等言于矣身曰林慶業身死之說皆是虛言沈器遠未得成事徑死豈不恨嘆

哉吾等欲爲擧事林慶業領兵自兩西定腹心兩將率領使之待變爲旀慶業由江原道潛爲下來兩南募得軍兵將爲西南道合勢犯京是如京居進士權大用及金堤居安衛妾子安益信判事稱名人果互相往來言說丁寧智異山居崔姓人定大將龍潭西面大堡聚兵來初一日先爲蹴踏全州則軍聲大振直犯京城則其餘小邑自然崩潰是如爲去乙矣身生死[3]可慮回避不得脅從雰是遣軍兵發去時相値被捉是去乎分揀施行敎事招辭是置有亦進士權大用及金堤安衛妾子判事稱云安益信等急急

<134쪽>

登時捕捉囚禁爲旀智異山崔姓人亦爲多般聞見捕捉爲乎矣諸賊招內皆云龍溪院磨造店及大堡亦中賊兵聚集初一日攻陷全州設計是如爲去等同聚兵處發軍跟捕俾無疎漏之弊向事關是白齊此亦中內尼山洪榮振連山李之馦公州金金禮上等段已爲先往龍溪磨造店大堡之間是如爲旀妻子幷以無去處是置貴府以多發軍兵急速擬捕囚禁移文次是如此亦中及爲等如關是白置有亦本道監司則今月十七日法聖前洋水操次以出巡時在嶺下未及還營乙仍于罔夜馳進之意乙一邊馳報爲白在果全州府尹臣鄭世規到關卽刻詣邑軍兵聚會待變爲白乎旀鎭屬各官及營將等處聚軍待變之意幷以罔夜分付爲白有齊權大用段推逃婢事到全州府是白乎等以已爲捉囚緣由事急燃眉臣爲先馳啓爲白臥乎事順治三年四月初三日啓下推鞫廳

3) 정씨(鄭氏) 진인(眞人) 수용과 정감록(鄭鑑錄)

○ 배경

- 조선왕조에서 正學인 성리학이 아닌 다양한 사상 체계들은 邪學으로 불리며 배척
- 공적인 유통 경로를 획득할 수 없었던 사상 체계들은 민중과 결합하며 명맥 유지
- 정치·사회적 모순 배경으로 변혁 사상으로도 기능; 미륵신앙, 풍수지리설, 도참 사상 등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후 조선후기의 사상계에 등장한 특이 현상 중 하나는 감결
  →현세에 대한 강한 거부와 이상향 추구
  ←대표적인 것이 정감록
  (규장각본에는 감결 등 4본, 광의로는 10종류 비기 포함)
- 현재 정감록은 18세기 중엽(1739, 영조15)에 나타나 18~19세기에 일어난 많은 민중 저항운동에 영향 준 것으로 이해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대기 사료에 기반
- 그러나 정감록은 오랫동안 금서로 있으면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전사되며 완성. 그 기원은 훨씬 이른 시기로 소급 가능
  ←추안급국안 등 사법기록 등 살펴보면 그 과정을 이해할 단서 마련

3) 번역본에 따라 事를 死로 교감 입력함.

- 17세기 이전부터의 연원 및 과정을 살펴보면, 정감록이 단지 미신적이고 허황된 것이 아닌, 갑자기 18세기에 나타난 것이 아닌 조선후기 시대상을 반영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이해 가능

○ 16세기말(선조)~17세기 전반(인조) 변란에 등장한 眞人

<선조대 기원>

- 1589(선조22) 정여립 사건

○ 이보다 앞서 1백여 년 전에, 민간에 '木子가 망하고 奠邑이 일어난다.'는 讖言이 있었다. 정여립이 妖僧 義衍과 모의하여 이를 玉版에 새긴 다음 지리산 석굴 안에 간직하였다.
○ 국초 이래로 讖說이 있었는데 "連山縣 鷄龍山 開泰寺 터는 곧 후대에 鄭氏가 도읍할 곳이다."라 하였다. (『宣祖修正實錄』 22년 10월 1일.)

=역모/무옥 엇갈리지만 서인이 정치적 이용하면서 많은 동인 희생
=이미 15말부터 木子망奠邑흥의 참언, 국초부터 계룡산 정씨 도읍설
← 이를 정여립이 이용. '정씨 왕조'와 '계룡산 도읍'은 정감록의 핵심
=내용중 가상 인물로 길삼봉 등장. 이후 1601년 일어난 길운절 사건에서도 언급. 삼봉 정도전의 호를 인용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

<인조대 변란 빈발/반정 및 호란>

- 1628(인조6) 유효립 사건; 같은해 사건 빈발

○ 草溪에 潮水가 들어오면 鷄龍에 서울을 세운다. 조선 사람들이 모두 병거지를 쓰고 털옷을 입는다. (추4-85)
○ 戊·亥年에 사람이 상하는 화가 발생하는데 寅·卯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 讖記에 '子·丑年에는 안정되지 않다가 寅·卯年에 쾌한다.'라 하였고 또 '辰·巳年에 仁城을 얻는다.'라 했다. 이 때문에 원주사람들이 모두 인성군에게 마음을 붙이고 있다.(『인조실록』 6년 1월 3일.)

=(인조 숙부)인성군 추대 실패. 많은 정씨와 허씨 가담. 많은 참서와 참언 소개
=초계·계룡 등은 비슷하게 정감록에 수용. 간지 통한 견강부회도 변란에서 변주
←戊·亥年은 인조반정 계해년, 子·丑年은 이괄의 난 갑자년, 辰·巳年은 사건 일어난 무진년

- 1628(인조6) 송광유 사건

○李氏가 누릴 나라의 복록은 3백년이라고 하네. 지금 대략적인 숫자로 따지면 3백년이고, 또 眞人도 이미 나왔다네. 어떤 術書에 이르기를, “하늘이 사람을 내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天雨人其國必亡]”라 했으니, 비의 뜻을 가진 ‘雨’라는 글자는 내린다는 뜻을 가진 ‘降’이라는 글자의 뜻이지. ‘하늘이 사람을 내린다’라는 것이 이르는 것은, 지난번에 昌城에 우박이 내렸는데, 사람 머리 모양이었다고 하니, 이것이 하늘이 사람을 내린 것이네.

○하늘의 기운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름답구나! 南山의 기운이 울창하도다!”라 했으니, 대체로 신하가 왕성해지고 임금이 쇠약해질 징조이지. 비록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남산의 소나무·잣나무가 무성한데, 더구나 許懿의 어릴 적 이름이 남산이라네. 진인이 태어났다는 말은 許 南山이 번창하여 왕성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 讖書에 이르기를, ‘巳丑許多人 午未樂堂堂’이라고 했네. ‘巳丑許多人’이라는 것은, 허의가 신축년(1601, 선조 34)에 태어났으며, ‘多’라는 글자는 ‘大’라는 글자의 뜻이니, 丑年에 태어난 許大人이 巳年에 떨치고 일어나 午·未年에 즐거움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옛적에는 절구질하는 소리에서나 도리깨질하는 소리에서나 모든 일할 때의 소리에서는, ‘이씨[李氏]’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절구질하는 소리에서, ‘허야[許也]’라고 말한다고 하네. 모든 일할 때의 소리에서는 ‘허야라, 허야라.[許也羅 許也羅]’ 한다고 하는데, ‘야라(也羅)’라는 말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許哥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모든 백성들이 허씨를 추대하기를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를 가지고 살펴보자면, 비록 삼척동자라도 許哥가 임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추4-174～175)

=윤운구 등 역모 무고 사건
=조선 3백년설. 참서의 간지·午未樂堂堂(정감록으로 계승)
=최초로 진인을 전면적으로 부각. 허씨(허의)와 이씨의 대립 구도
=무고이므로 참서는 조작일 수 있지만, 의미는 적극적 추구 필요.
←당시 유포된 이야기를 채용

• 1628(인조6) 沈致 사건
=송광유 연장선상 역모 무고
=(계룡산) 근처 연산을 새로운 도읍으로
=동년 윤4월 任慶思, 한양 대신 연산 도읍 주장하며 역모하다 처형

• 1629(인조7) 이충경 사건
=호란 계기 발생 유민 모아 역모 미수
=개국대전 통해 이상사회 모습을 구현
=최영·남이 등 숭배; 반 왕조적 의식 구현
←1596년(선조 29) 최영 후손 최담령, 김덕령에 연루. 이후에 최영 후손 연루 지속

• 1631(인조9) 鄭澣 사건

○나의 相으로 볼 때 앞으로 아주 귀하게 될 것이며 우리 집의 터도 좋아서 午·未年 사이에 府院君이 될 것이다.

○영남의 鄭씨 성을 가진 사람은 생김새가 기이하고 두 어깨에 해와 달의 모양이 있는데, 이 사람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을 것이다. 이 사람은 伽倻山 아래에 사는데, 이름은 鄭澣이고, 나이는 임오년(1582, 선조 15) 생이다.(『인조실록』 9년 2월 3일.)

○金安國이 제게 말하기를, “오래지 않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이는 남자가 공을 세울 때이다. 嶺南에 異人이 있는데 이가 바로 정한이다.”라 하고는 이어 저와 함께 정한의 집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이어 정한의 넷째 아들의 관상을 보고, 제가 詩를 지어 정한에게 주었습니다. 김안국이 정한의 뜻을 살피려고, 정한에게 말하기를, “崔瑩의 후신이 지금도 있다.”라 하니, 정한이 함께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안국이 제 이름을 楊後瑩이라고 하고 만나보러 갔는데, 정한이 제게 말하기를, “북쪽에 변란이 생기면 우리 무리가 남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남쪽에서 倭亂이 생겨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라 했습니다.

○許哥의 아들은 비범한 사람인데 승려가 되었다. 우리가 이 사람과 큰일을 할 것이다.(추 4-823)

=유랑 지식인, 大北 잔당, 지역 중인 등 결탁. 진인 요소 구체화
=간지로 참언 구체화, 정씨(정한)을 이인(진인)으로 추대, 최영 후손, 허씨도 거론
←앞선 사건에 나타난 각종 이미지가 종합적으로 채용

• 1633(인조11) 임석간의 고변
=정온·정훤의 추대설, 인심 귀의설.
=정훤은 정몽주의 8세손, 상징성 이용

• 1646(인조24) 안익신 사건

○역적의 대장은 崔氏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崔瑩의 후예로서 智異山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林都督이라고 불렀습니다. … 또 이지혐의 말을 들으니, “군병을 일으켜 올라가면, 盲人이라 일컫는 鄭致和 및 訓鍊都監의 砲手와 捕盜大將이 모두 안에서 호응할 것이다….” 했는데, 이 말은 인심을 돌려 복종시키려는 뜻인 듯했습니다. 대장은 林慶業이고 그 다음은 崔晃이며 …(추 6-239～240)

○全南道의 장수는 崔瑩의 8대손인 崔氏 성의 사람이다. 慶尙道의 장수는 鄭氏 성의 사람인데, 모두 그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 智異山으로 들어가 날짜를 고를 것인데, 27～28일 무렵에 군병을 일으킨다고 한다.(추 6-258)

○望德村에 거주하는 生員이라 일컫는 鄭珹이 天文을 잘 아니 장수를 할 만하다.(추 6-300)

○난세가 막바지에 이르면 치세를 생각하고, 어지러움을 틈타 굳세게 일어난다는 옛 말이 있다. 하늘의 뜻에 부응한 眞人이 지금 이미 나왔으니, 나와 같은 사람이 가서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추 6-143)

=서울과 지방의 하층 양반 결탁, 전라·충청도 일원 거병 실패
=당시 청에 있던 임경업을 거짓 끌어들임; 반청·반조정 상징적 인물
=최영 후손과 여러 정씨 및 鄭�诚(정감록 鄭鑑과 동음)
=진인 거론. 정씨와 최씨 경합

※16세기 말 宣祖代부터 17세기 전반 仁祖代까지 反왕조적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나 그들의 후손을 '眞人'으로 내세운 각종 변란 빈발. 이는 양란 이후 이반되어 가던 민인들의 정서 및 인조반정 등 정국의 변동과 관련. 그 과정에서 鄭氏·崔氏나 許氏 등이 진인으로 부각,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특이한 관상이나 干支와 관련된 讖言 등 동원.

○ 17세기 말~18세기 전반 鄭氏 眞人의 수용과『鄭鑑錄』
• 17세기 중반인 효종·현종대에는 진인 관련 변란은 보이지 않음
=인조대의 정치적 불안 극복. 북벌론 관련 내부 통제 강화 영향
=진인 출현설은 민중 사이 확대. 점점 정씨로 귀결
=17세기말 이후 숙종대 모반에서는 정씨 진인설 확고
• 1682(숙종8) 노계신의 고변

○갈 곳은 바로 鄭經의 나라입니다. 朝鮮을 鄭哥가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내년은 바로 癸亥年인데, 옛날 仁祖大王이 나라를 빼앗아 즉위한 해입니다. 내년 4월이 바로 나라를 차지할 해입니다.(추 9-500)

=경신환국(숙종6) 연루 오시항이 모반한다 무고
=정경(대만 차지 鄭錦) 연관 정씨와 인조반정 계해년을 견강부회
• 1687(숙종13) 양우철의 상변

○新羅는 金氏 37명의 임금 뒤에 王氏에게 망하고, 왕씨는 나라를 차지한지 5백여 년 뒤에 李氏에게 망한다. 이씨는 나라를 차지한지 3백여 년 뒤에 鄭氏에게 망하고, 정씨는 나라를 차지한지 2백여 년 뒤에 曺氏에게 망한다. 조씨는 나라를 차지한지 1백 년이 못되어 魏氏에게 망한다. 이 때 나라가 넷으로 나뉘는데 하나의 도읍은 鷄林이고, 하나의 도읍은 完山이며, 하나의 도읍은 松岳이고, 하나의 도읍은 平壤이다. 계림에서 임금 노릇할 성씨는 朴이고, 완산에서 임금 노릇할 성씨는 卓이며, 송악에서 임금 노릇할 성씨는 魏이고, 평양에서 임금 노릇할 성씨는 奇이다.

○王氏의 나라가 끝날 무렵 鄭氏 성의 文人과 崔氏 성의 武人이 왕실에 충성하여 천하에 명성이 드러나는데, 공적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제 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죽는다. 李氏의 나라가 없어질 무렵 梁氏 성의 선비와 李氏 성의 무관이 朝鮮 왕조에서 공을 세워 위엄이 중국까지 떨치니, 충성스럽고 신중함이 널리 알려져 몸과 명예를 끝까지 보존했다.

○嶺南의 풍속은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워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온다. 湖南의 풍습은 한결같지 않으니 착한 구석도 있고 악한 구석도 있다. 子·丑年에 鄭氏 성이 반역을 꾀하고, 卯·辰年에 본토박이 閔氏·文氏와 귀양 온 사람 鄭氏·洪氏가 다시 흉악한 역적질을 꾀하지만 거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한다. 中條山 아래에 水姓을 가진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이 나오는데, 당시는 李氏의 나라가 끝날 무렵으로 충성과 효성이 널리 드러나고 中華와 오랑캐가 두려워서 복종한다.(추 10-26~27)

=정씨 진인설이 유포되며 참서의 형태 갖춤
=참서, 정씨가 이씨 대신. 청나라와 힘을 합해 조선 멸망 정씨 추대
=신라-고려-조선 이후 계승할 왕조 성씨와 도읍지 거명
←정감록과 유사한 구조
=정몽주(정씨성의 문인)·최영(최씨성의 무인)·정여립(자축년에 정씨성이 반역) 등 거명하며 자신의 무고 대상과 연결
=당시 이미 정감록 원형이 되는 참서가 책자 형태로 유포 가능성
←『비기대총』 표현
• 1691(숙종17) 차충걸 사건

○하루는 차충걸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저의 아내가 生佛의 일을 언급하니, 차충걸이 이르기를, "鄭 統制使의 부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의 나이가 겨우 7세인데 간 곳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 生佛이 바로 그 아이가 아니겠습니까?"라 하니, 저의 아내가 차충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나라를 차지해 가질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鄭氏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추 10-889~890)

○(차충걸이) 대답하기를, "제가 달리 했던 일은 없습니다. 漢陽이 장차 망할 것이라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라 했습니다. 그 말뜻을 살펴보니,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甕邑의 讖'을 가리키는 듯했습니다.(추 10-815)

=황해도 巫覡들의 요언범상 처벌 사건
=정씨 아이 생불설, 정씨 득국의 전읍의 참언이 널리 퍼져 있음
=종래 사건처럼 주모자들이 정씨 진인설에 가탁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하던 것과는 달리, 민간에서 먼저 진인설을 믿고 정씨를 찾아다니는 상황
• 1694(숙종20) 갑술환국

○時運이 다하여, 鄭氏 성의 眞人이 이미 海島에 나타났다. 甲·乙 두 해에 나라가 반드시 어지러울 것이니, 이때에는 眞人이 반드시 육지로 나온다. 우리들이 마땅히 맞이하러 가

는 일이 있어야하는데, 반드시 무리들이 많아야하고 재물이 없으면 안 된다.(추 11-255)

=중앙 정계 환국에서도 거사 명분으로 이용; 남인 실각 서인 등장
=정씨 진인설의 출처로 海島 거론(이후 해도 기병설 원조)

• 1697(숙종23) 이영창 사건

○ 圃隱 鄭夢周의 13세손과 崔瑩의 후손을 기운을 살펴서 찾아냈다. 鄭哥를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세우고, 崔哥를 중국의 임금으로 세울 것이다.(추 11-740)

○ 咸鏡道에 朱栗가 있는데, 진정 기이한 선비이다. 포은 정몽주의 자손인 바다의 眞人을 江華 摩尼山 아래에서 찾았는데, 몸에 한 자[尺]쯤 되는 털이 나 있고 큰 귀가 어깨까지 드리워졌으며, 그 털은 저절로 사라졌다. 대여섯 살이 된 뒤에 開城府 德物山 아래로 옮겨가 살았다. 그 어미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수상한 점이 많아, 어미에게 이롭지 못하다."라 하고는 곧바로 버리고 떠났다. 주비가 마침 지나가다가 보고는 기이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이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 될 관상이다. 일찍이 任대에게 듣기를 '바다에 진인이 있다.'라 했는데, 지금 과연 그렇구나."라 하고는 …(추 11-757)

○ 秘記에 이르기를, "辰·巳年에는 聖人이 나고, 午·未年에는 즐거움이 대단하다."라 했는데, 이것도 이 진인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추 11-729)

○ 또 讖記에 이르기를, "泰白山의 精氣가 벌레로 바뀌고 漢江에 이르러 솔잎을 죄다 먹어치운다."라 했으니, 지금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추 11-766)

=정씨와 함께 최씨도 다시 등장; 정몽주와 최영의 후손
=각각 역할 분담. 정씨에 더 비중; 진인으로 정씨 거론
=송광유 사건의 '오미낙당당' 참언 반복 거론(정감록으로 수용)
=마지막 참기(태백산·한강)도 비슷하게 정감록에 수용
→"송악산 산벌레가 나뭇잎을 거의 다 갉아 먹고…"

<영조대 전면적 등장>

• 1728(영조4) 무신란

○ 역적은 邊山 도적인 鄭氏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 이른바 鄭都令은 변산으로부터 와서 陽城 九萬里에 머물렀습니다. 권 생원과 모든 일을 상의하며 壯軍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정도령은 둔갑술을 잘 펼치고 부적을 잘 만든다고 합니다.(추 14-437~438)

○ 鄭都令이 장수가 되어 전국 8도가 모두 호응했다. 네 비록 늙은 나이지만, 姜太公은 80살 나이로도 오히려 공적을 이루었으니, 너도 모름지기 동참하라.(추 15-76)

=소론·남인 정치적 입지 급격 축소, 여기도 정씨 진인설 등장
←정도령, 경상도 정희량

• 1729(영조5) 이석효의 무고
=鄭錫이 임금 기상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듬, 정몽주 후손이 이유

• 1739(영조15) 정감록 대책 논의

○ 이때 서북 변방 사람들이 鄭鑑의 讖緯한 글을 파다히 서로 전하여 이야기하므로 朝臣이 불살라 금하기를 청하고 또 言根을 究覈하고자 하기에 이르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이 어찌 秦始皇이 서적을 지니는 것을 금한 것과 다르겠는가? 正氣가 충실하면 邪氣는 실로 절로 사라질 것이다. 정기를 도우려면 학문이 아니고서 어찌하겠는가?"라 하였다.(『영조실록』 15년 8월 6일)

=자료는 제한적 이해해야. 서북지방에서 유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해도, 기원·출현을 서북으로 이해하는 기존 연구는 잘못

※17세기말 肅宗代 이후 18세기 전반 英祖代에 이르는 과정에서 眞人說의 주인공은 점점 鄭氏로 귀결,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던 讖書는 최종적으로 『鄭鑑錄』으로 수용.

• 이전 단계에서 함께 거론되던 최씨와 허씨가 탈락하고 정씨가 최종 주인공이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 다만 反왕조적 상징성이 다른 성씨에 비해 더 강했던 측면
• 許氏; 柳孝立 사건에 대거 가담하고 宋匡裕 사건에서 처음 진인으로 부각. 다른 성씨에 비해 反왕조적 역사성이 부족
• 최씨; 崔瑩이라는 존재와 관련, 숙종대까지 정씨와 함께 진인 대상 경합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정씨.

• 정씨가 지닌 反왕조적 상징성이 최씨보다 더 강했던 측면. 鄭夢周·鄭道傳의 희생은 이미 15세기부터 鄭氏를 反왕조의 중심으로 삼는 奠邑의 讖言으로 나타났고, 이에 덧붙여 鄭汝立의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증폭.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각종 변란에 반영되면서 다시 새로운 형태의 참언과 참서, 오랜 기간의 상호 작용을 거쳐 결국 『鄭鑑錄』으로 귀결
=이후 포청 기록 보면 1843년(헌종9) 이만서 고변에도 정씨 진인
• 양란 이후 지배층이 정책적 측면에서 대민 통제책, 군사적 측면에서 북벌론, 사상적 측면에서 중화회복 및 계승 의식 등을 표방하며 정국을 수습
• 민중들도 지배층과는 다른 측면에서 왕조를 극복하려는 저항의식을 체계화하고, 때로는 변란으로 표출. 정감록으로 이어진 진인 사상 등이 대표적. 정감록(적 사상체계)는 16세기말부터 19세기까지 조선후기 전 기간을 관통. 그 기간을 통과하며 내용을 채워나감

• 추안급국안은 17세기초(1601)부터 19세기 말까지(1892) 조선후기 추국 기록의 대부분을 수록. 나머지 사법 자료는 19세기에 편중. ←자료적 가치
• 궁극적 지향은 정치사/사회사/사상사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의 사회상/역사상을 확인하는 작업.
• 조선후기에 지속된 각종 모반·역옥 사건 분석을 통해, 그러한 역사상에 접근할 근거 마련
←조선후기 여러 정치 세력 간의 다양한 대립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국왕 vs. 신료, 붕당 vs. 붕당, 지배층 vs. 피지배층
• 환국 정국의 정치사, 모반의 사회사, 국가의 대민 지배, 민중의 사상사
• 조선후기 형사정책 및 범죄에 대한 연구 경향도 정치사에서의 붕당/탕평론, 사상사에서의 조선중화주의/진경시대론에 입각하여 이해.
• 정치·사상사적인 이해에도 이론이 제기, 사법적 측면만 고려해도 여러 모순 존재.
• 濫刑·酷刑을 폐지한 英祖의 欽恤(신중하게 심의)策이나 이를 계승했다는 정조 시대에 오히려 추국의 절차가 파행적으로 운영. 결안을 받지 않거나, 받는 절차도 위협적·강압적. 정조대 이후로는 1문1답으로 바뀌면서 심문내용이 그대로 결안으로 이어짐. 영조대에 남형·혹형 폐지도 이미 을해역옥(영조31) 까지 남인·준소 등 정적 제거에 충분히 이용한 뒤. 난장·주리 등은 포청에서 계속 사용

4) 기타 추국의 주요 사건
○ 1680년(숙종6) 오시수 옥사
• 경신환국 중 유배 중이던 오시수 붙잡아 와서 국문
• 1670년(현종11), 1675년(숙종1) 사건과 연루
• '신강(臣强)'설과 연루, 결국 사사
=숙종과 서인 김수항 주도
• 청나라와 양국 통역 관련
• 청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분기되는 계기
←종래에는 송시열/윤증 갈등설 혹은 숙종8년 임술고변 처리설
○ 1844년(헌종10) 회평군 이원경 모반
• 연대기자료 도삭(刀削)으로 실체에 접근 어려움
→추안급국안·포도청등록으로 복원 가능

• 이원경: 전계대원군 장남, 후에 철종이 되는 이원범의 적형(嫡兄)
• 조부 은언군은 사도세자 아들로 정조의 아우. 순조대 신유사옥때 사사
• 은언군 아들들도 역모에 연루되어 고초
• 남아있던 영조의 유일한 혈족
→혈통에 주목한 전직 관리들의 접근, 집안 관련 불만 품던 이원경 동조
←구체적 거사 준비는 없음
• 결과적으로 철종 즉위의 배경
←세도 정권에 의해 선택된 철종에게 왕실 권위 회복 기대 난망